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6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이수진·김정호·서미화
정태호·박희승·정혜경
김문수·전진숙·김남희
임미애·송옥주·서영석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회에 한정하여”를 “횟수에 상관없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2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2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 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u>20일</u> 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 ----- ----- --- <u>30일</u>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3회에 한 정하여</u>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 <u>횟수에 상관없이</u>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u>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 나 2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 는 2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u>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u>만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를 양육하기 위하여	제19조(육아휴직) ① ----- ----- ----- <u>13세 미만 또 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u> ----- ----- -----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

-. -----
-----.

② ----- 2년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 13세 미
만-----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간은 <u>1년</u>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략)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u>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 <u>2년</u> -----. ----- -----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 <u>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